



# 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 결과

## 1. 협상 경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하고 협상 개시 이전에 타당성 및 추진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진 바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2004년 세계 수입의 22% 점유)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 증대의 필요성 등이 고려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18일 대통령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의지를 밝힌 바 있고, 2월 2일에 한·미 FTA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2월 3일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한·미 FTA 공식협상은 미국의 국내법 절차

에 따라 협상선언 90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 협상은 2006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협상은 17개에 분과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① 상품무역, ② 농업, ③ 섬유, ④ 원산지 및 통관, ⑤ 무역구제, ⑥ 위생검역, ⑦ 기술장벽, ⑧ 서비스, ⑨ 금융서비스, ⑩ 통신 및 전자상거래, ⑪ 투자, ⑫ 정부조달, ⑬ 경쟁, ⑭ 지적재산권, ⑮ 노동, · 환경, · 분쟁해결 및 투명성.

공식 협상은 2006년 6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2007년 3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식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은 중요한 쟁점들은 2007년 3월 19일부터 개최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타결되었다.

### 한·미 FTA 협상 경과

- |                       |                       |                        |                        |
|-----------------------|-----------------------|------------------------|------------------------|
| ○ 2006. 2. 2.         | 공청회                   | ○ 2006. 12. 4. ~ 8.    | 5차협상(미국)               |
| ○ 2006. 2. 3.         | 협상개시 선언               | ○ 2007. 1. 15. ~ 19.   | 6차협상(한국)               |
| ○ 2006. 3. 6. ~ 7.    | 비공식 협의<br>(미국측 한국 방문) | ○ 2007. 2. 10. ~ 15.   | 7차협상(미국)               |
| ○ 2006. 4. 17. ~ 18.  | 비공식 협의<br>(한국측 미국방문)  | ○ 2007. 3. 5. ~ 6.     |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br>(미국)    |
| ○ 2006. 6. 5. ~ 9.    | 1차협상(미국)              | ○ 2007. 3. 8. ~ 12.    | 8차협상(한국)               |
| ○ 2006. 7. 10. ~ 14.  | 2차협상(한국)              | ○ 2007. 3. 19. ~ 30.   | 고위급 협상(미국, 한국)         |
| ○ 2006. 9. 6. ~ 9.    | 3차협상(미국)              | ○ 2007. 3. 31. ~ 4. 1. | 협상시한 연장,<br>고위급 협상(한국) |
| ○ 2006. 10. 23. ~ 27. | 4차협상(한국)              | ○ 2007. 4. 2.          | 협상타결 선언                |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2. 협상 결과

농업분과의 협상 대상 품목 수는 모두 1,531 개이며, 이 가운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대부분 8차 협상까지의 공식 협상에서 합의하였거나 합의에 가까운 의견접근을 도출하였다. 8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260여개 품목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타결되었는데 고위급 협상으로 미루어진 주요 품목은 곡물류 가운데 보리, 콩, 감자, 과일류 가운데 사과, 오렌지, 포도,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그밖에 천연꿀과 인삼 등이었다.

**쇠고기:** 협상 초기 우리나라는 쇠고기에 대한 양허안을 '미정'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미국은 관세의 즉시철폐를 요청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국의 상반된 입장은 8차 협상까지 변화가 없었으나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의 15년 철폐로 타협을 보게 되었다. 쇠고기에 대하여는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행기간 중 긴급관세(ASG)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ASG 적용 대상 품목은 0201-10-0000부터 0202-30-0000까지 6개로 냉장 및 냉동 쇠고기 중요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발동기준 물량

은 1년차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는 35만 4천 톤이 된다. ASG 발동 수준은 5년차까지는 실행세율만큼 인상, 6~10년 차까지는 실행세율의 75% 수준까지 인상, 11~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60%까지 인상할 수 있다.

**돼지고기:** 냉장육과 냉동육의 관세철폐 기간이 다르게 결정되었으며,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2014년 1월 1일까지 관세철폐로 결정되었다. ASG는 냉장육에 대하여만 10년간 적용하게 된다. ASG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8,250톤을 시작으로 매년 6%씩 증량하여 10년차에 13,938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ASG 발동 수준은 1~5년차에는 실행세율까지 인상하고 6~10년 차에는 실행세율의 7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인하하여 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닭고기:** 부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통닭(냉동 기타 제외) 및 닭가슴과 닭날개 냉동육은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나 통닭(미절단, 기타, 냉동), 냉장 닭가슴, 닭다리, 닭날개 등 대부분의 닭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낙농품:** 낙농품 가운데 민감하게 다루어진 것은 분유, 유장, 치즈 등이었다.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저율관세 쿼터(TRQ)를 제공하고 현



# 특집

## 한·미 FTA타결이 축산·사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행관세는 유지된다. 유장은 초기 관세를 20%에서 시작하여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TRQ는 3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사료용 유장은 즉시철폐)하게 된다. 분유와 연유의 TRQ는 5천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된다. 치즈의 관세 철폐 기간은 체다치즈는 10년, 기타치즈는 15년이며, TRQ는 7천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무관세)된다.

**천연꿀:** 현행관세(243%)를 유지하되 TRQ(무관세)를 200톤 제공하고 매년 3%씩 증량한다. 인조꿀 등 벌꿀 관련 제품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3. 영향 및 평가

파일, 곡물, 축산물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한·미 FTA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부문은 축산업으로 예상된다. 10년간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가정한 연구결과에서 피해규모는 축산업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 2003년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20만 톤에 달한다(전체 수입량의 68%). 따라서 미국과의 FTA로 관세가 낮아질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생 이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한육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산액 감소는 10년간 연평균 2,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한 농경연의 자료(2006년 8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미국산 점유율이 29%(6만 1천톤, 2006년 기준)에 이른다. 미국산 한·미 FTA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

세가 낮아지면 삼겹살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돈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경연은 10년 관세철폐시 연평균 1,300억원 정도의 생산감소를 추정한 바 있다.

그밖에 낙농품과 닭고기 등에서도 연평균 1,000억원 이상의 생산액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일정한 가정조건 아래 추정된 것이나 실제 협상타결 내용을 가지고 추정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세철폐가 완료된 시점의 축산부문 총생산액 감소는 7,700억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협상결과는 관세의 장기철폐(10년 이상), 긴급관세 제도 도입, TRQ 제공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협상타결 이전의 연구결과보다 피해가 감소될 것이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FTA의 특징 또는 평가는 먼저 극히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되어 칠레,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 비해 개방 폭이 크다는 것이다. 현행관세 유지 품목은 쌀, 일부 낙농품, 천연꿀, 감자, 오렌지, 대두 등이다. 그러나 관세 철폐 예외 품목도 쌀을 제외하고는 관세할당량을 허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이 8차 협상에서도 예외 없는 관세철폐 및 주요 민감품목일수록 관세를 단기에 철폐할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의 장기철폐, 세번분리, 계절관세, 긴급관세 제도 도입 등으로 구조조정 기간을 확보하고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한 충격 흡수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 4. 대책방향

한·미 FTA의 개방 폭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력 제고, 소득안정, 농촌복지 정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 개방은 한·미 FTA는 물론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시 중단되었던 WTO/DDA 협상은 2006년 11월 WTO 무역협상위원회와 2007년 1월의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되었고(미국, EU 등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 지난 여덟 번의 다자간 협상이 모두 타결되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DDA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장개방 수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비해 클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의 FTA도 우리 농업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이며, 2007년 공동연구 단계를 지나면 2008년 이후 공식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세 가지 대외적인 변수(한·미 FTA, DDA, 한·중 FTA)를 고려하여 다양한 국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DDA와 한·중 FTA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농업·농촌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책 수립 과정에 농업계는 물론 소비자와 비농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소득보전, 노령화되는 농촌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토 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대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득보전 직불은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하거나, 기능별로 농업이 담당하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대책으로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된 농가소득안정 대책은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농가소득을 보상하는 성격의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농가소득보전은 직접지불 형태의 확대를 통해 WTO 제약 조건을 지키고 경제위기 현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지불 규모는 경제 성장률, 각종 사회적 성장 지표와 연계시켜 도농간 소득 격차는 물론 사회적·지역적 균형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구분하여 자가소비용 생산으로 시장개방과 무관하게 생산하는 영세농민은 농업정책 대상보다 농촌정책 대상으로 분류하여 농업정책의 집중성과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시장개방의 확대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 자재, 기술, 유통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관산업까지 포함한 산업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것도 요구된다.

불법적 수입이나 원산지 둔갑, 밀수,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그밖에 지역 단위의 브랜드화,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원산지 표시제, 인터넷 마케팅 등 생산자 및 관련 단체의 다양한 마케팅 기법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DDA 및 FTA에 대비하여 기존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보완되고 한·칠레 FTA 대비 과수산업 중심의 FTA 지원 대책(FTA 이행 특별법)은 거대 경제권 및 농업 강대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곡물, 채소, 축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촌의 우려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